

〈별지 1〉 재가노인복지시설 요금표

요금표

2023. 01.

(주)삼성종합복지센터

재가노인복지시설 요금표

I. 공통

1. 월이용료

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월 이용한도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,

(2023년 1월1일 기준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1,885,000원	1,690,000원	1,417,200원	1,306,200원	1,121,300원	624,600원

월 이용료 (본인분담금)	일반 수급자 : 월 한도액까지는 15 % 감경대상자 : 월 한도액까지는 9 %, 6% 기초생활수급자 : 0 %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%부담
------------------	--

II. 방문요양

1. 방문요양(방문당) :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

구 분	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
방문요양		가-1	가-2	가-3	가-4	가-5	가-6	가-7	가-8
		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		16,190원	23,480원	31,650원	40,280원	46,970원	52,880원	58,930원	65,000원
본인 부담율	15%	2,420원	3,520원	4,740원	6,040원	7,040원	7,930원	8,830원	9,750원
	9%	1,450원	2,110원	2,840원	3,620원	4,220원	4,750원	5,300원	5,850원
	6%	970원	1,400원	1,890원	2,410원	2,810원	3,170원	3,530원	3,900원

가.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“가-8”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.

나.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.

다.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,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Ⅲ. 방문목욕

구 분	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	나-1	나-2	나-3
	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	82,160원	74,070원	46,250원
본인 부담율	15%	12,320원	11,110원	6,930원
	9%	7,390원	6,660원	4,160원
	6%	4,920원	4,440원	2,770원

- (1)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(물, 비누, 수건, 욕조, 목욕의자, 로션 등)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- (2)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가. 차량 이용 방문목욕(나-1, 나-2)

- 1)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,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.
- 2)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, 급탕기, 물탱크, 펌프,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“이동목욕용”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.
- 3) “이동목욕용”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“나-1”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.
- 4) 욕조, 펌프,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나-2”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.

나.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(나-3)

- 1) 목욕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,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
- 2)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,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- (3)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. 다만,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(혈압,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)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(5)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, 입욕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 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,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.

【 별표1 】 기관 조직도

